



대구대학교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 위·수탁 협약서

대구대학교가 북한장애인 복지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함에 있어 대구대학교총장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간에 다음과 같이 위·수탁협약(이하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협약은 대구대학교가 북측과 협의한 북한 장애인 복지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·수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위·수탁기간) 이 협약에 의한 위·수탁기간은 협약이 체결된 날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3조 (위탁 및 수탁) “갑”은 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“을”에게 위탁하고, “을”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수락한다.

제4조 (사업의 개요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업명 : 북한 장애인 복지 및 재활서비스 지원 사업
2. 사업내용

- 가. 북한 의료기관 재활시설 및 장비개선 지원 사업
- 나.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교류와 협력 사업
- 다.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북한 장애인 지원 사업

제5조 (위탁사업비) 이 협약에 의한 위탁사업비는 금일억팔천만원(₩180,000,000)으로 하되, 이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의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.

제6조 (위탁사업비의 지급) “갑”은 위탁사업비를 “을”的 청구에 의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며,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(위탁사업비의 관리 등) 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위탁사업비의 지급·관리 및 정산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

③ “을”은 사업을 종료한 후,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지출 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90일 이내에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

④ “을”은 위탁사업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, 정산 시에도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며, 정산후의 집행 잔액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“갑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제8조 (사무분담) ① “갑”은 사업계획 수립, 소요예산 지원, 홍보 등 기획·조정업무를 추진한다.

② “을”은 대북협의, 사업시행, 물품계약, 반출·입, 선적 등 제반절차를 수행한다.

제9조 (협약의 준수 등) ① “갑”은 천재·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이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“을”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 “을”은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“을”은 “갑”이 부담한 위탁사업비의 전액을 지체 없이 “갑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.

제10조 (권리의무의 양도금지) “을”은 이 협약과 관련된 권리나 의무를 “갑”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1조 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, “갑”과 “을”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“갑”的 해석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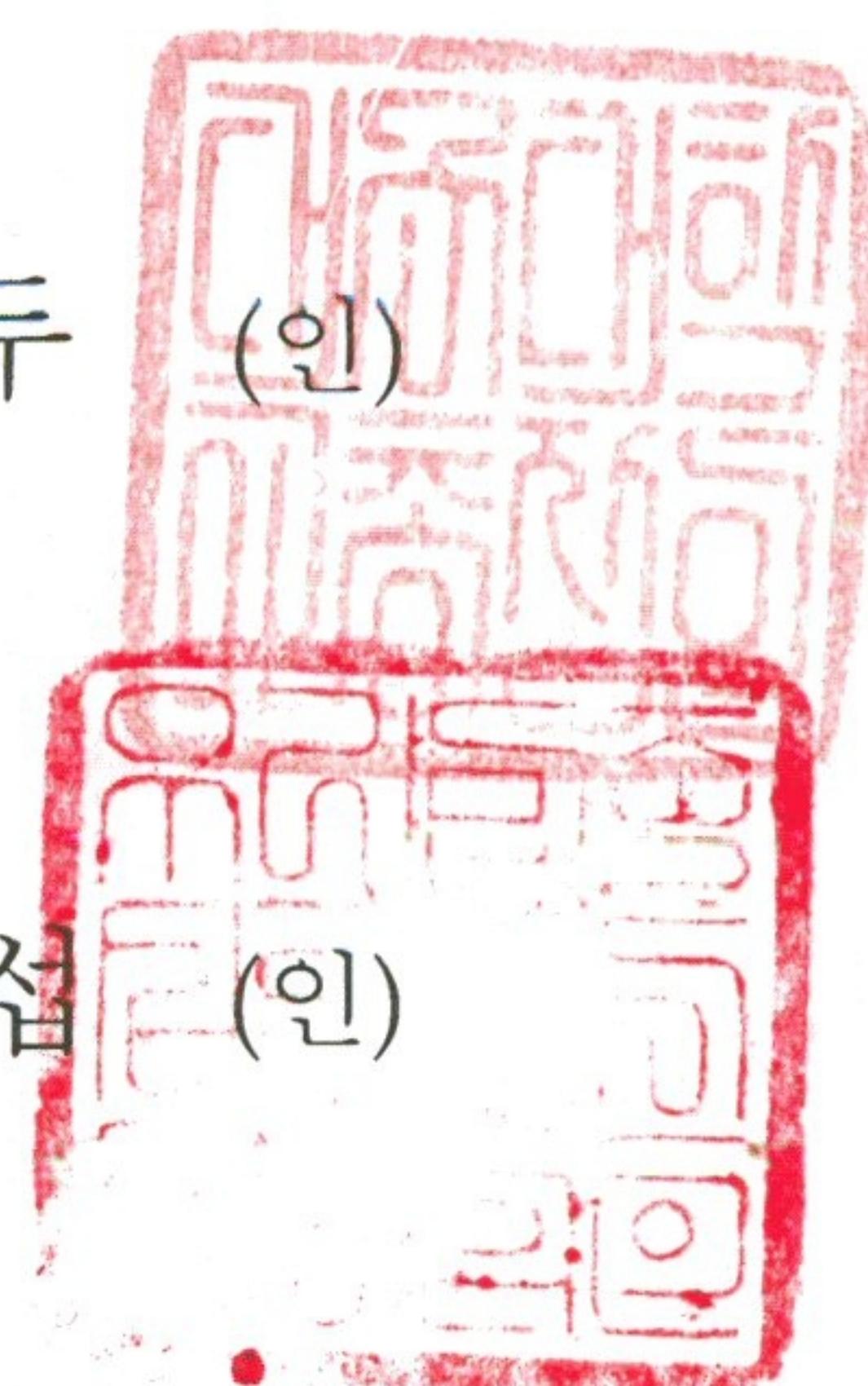
제12조 (협약의 효력발생) 이 협약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협약서에 서명·날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갑”과 “을”이 서명·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6년 3월 13일

[갑] : 대구대학교 총장

이 용 두 (인)



[을] :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송현섭 (인)